

동시설세 1,517천원 등 총 15,187천원의 효과를 거두었다.

주요조사대상은 2층이상 층수에 따른 가산율, 2층이상 건물중 상가에 대한 가산율의 적용이며, 연도별로 가산율이 확대 또는 신설된 것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다. 부속건물의 주용도변환

일반적으로 창고라고 부르는 건물이 주택이나 상가에 있을 경우 이는 주용도 즉, 주택이나 상가로 적용되게 되어 있다. 공장 또는 전문창고보관업자의 창고만 이 창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나 주택이나 상가의 부속건물이 창고로 입력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택이나 상가 등 공장이 아닌 건물과 함께 있는 창고내역을 발췌하여 조사하여 주용도로 변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재산세 등 총 17,043천원의 세수증대를 이루었다.

라. 2000년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11.5% 증수

“가.나.다”번이외에도 경량철골조 중조립식판넬조조사 및 유흥주점 일체조

사를 2000년에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신축이 별로 없고, 과표인상요인이 미미함에도 2000년 정기분 재산세과세결과 전년대비 11.5%를 증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구조 등 질적요소를 추가하여 건축물일체조사에 임한 결과, 코드수가 20여개에 이르는 재산세과세대장의 내용이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탈루면적 발견이라는 기본목적외에 구조·가산율 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정기분 재산세과세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게 되었다.

향후에도 건축물과표 안정시 질적요소는 더욱 정교화·강화되어 나아갈 것인바, 『건축물일체조사시 질적개념도입 추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할 것이며, 읍·면·동 기능전환시에는 각종 조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도 지닌다 할 것이다. ☺